

## ■ 목 차

### ■ 지평지성 소식 ■

- 지평지성,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3
- 윤영규 변호사 영입 ..... 4
- 김형근 변호사 영입 ..... 4
- 박경택 변호사 영입 ..... 5
- 이상호 미국변호사 영입 ..... 5
- 유동호 미국변호사 영입 ..... 6
- 박안나 미국변호사 영입 ..... 7
- 김대빈 공인회계사 영입 ..... 7
- 강원일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 8
- 송한사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 8
- 최수진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 8
- 이광선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 9
- 유정한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 9

### ■ 업무사례 ■

-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10
- 지평지성,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 12
- 지평지성, (주)이글루시큐리티가 수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법률자문 ..... 13

### ■ 칼럼 ■

- [금융\_해외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유의점 ..... 14

### ■ 최신 법령 ■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 17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

- [금융관련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24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7
- [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석 ②.....29
- [자원·에너지·환경&인프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31

## ■ 최신 판례 ■

- [형사] 정보저장매체(USB) 원본과 출력물의 증거능력.....33
- [지적재산권]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사용료의 범위.....36
- [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40
- [행정]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43
- [조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46
- [헌법] "7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2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헌 결정".....48
- [도산]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52
- [보험] 단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54
- [계약·바이오·의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관계 서류'의 범위.....56

## ■ 단신 ■

-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차 정보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 외.....59
- 이근동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60
- 이행규 변호사, 통상산업포럼 분과 전체 워크샵에 법률분과 위원으로 참석.....61
- 상해 사무소 최정식 변호사, 중국 차스닥 상장회사인 상해진리타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61
- 정철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주관 '미얀마 투자진출 세미나'에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및 최근 적용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의.....62
- 권순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휴먼텍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62
- 김혜영 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창업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63
- 이해원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률분석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63
- 한승혁 호주변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 주최 '제1기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워크샵' 교육에서 '아세안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법률)'을 주제로 강의.....64
- 구상수 공인회계사, 논문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이 '조세와 법' 제6권 제1호에 게재.....64

■ 지평지성 소식 ■

## 지평지성,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주관한 '현행 임금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지난 7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기업 및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김지형 고문변호사(전 대법관)가 '우리 임금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지평지성의 김성수 변호사가 '통상임금 판결분석과 임금설계 대안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김성수 변호사, '통상임금' 하급심 50 건 분석 발표(2013. 7. 12)
- 경향신문 -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2013. 7. 9)
- 머니투데이 - "통상임금, 판례가 혼란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부당"(2013. 7. 9)

### [관련 사진]



[1세션과 2세션의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지평지성의 김지형 고문변호사와 김성수 변호사]

■ 지평지성 소식 ■

## 윤영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윤영규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9월 23일 윤영규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윤영규 변호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였고, 금융규제법령에 관한 자문, 금융소비자 분쟁에 관한 업무, 금융관련 각종 인허가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형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형근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9월 23일 김형근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형근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한미 FTA 협상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법무법인 세경에서는 외국 선사들을 대리하여 국제소송, 국제거래 및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주)LG디스플레이와 Hewlett-Packard Co.에 근무하며 다양한 형태의 Cross-Border M&A와 JV 설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에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경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경택 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7월 8일 박경택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경택 변호사는 법무법인 총정에서 회사 관련 자문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지평지성 금융파트에 소속되어 금융·증권, 해외법무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상호 미국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8월 19일 이상호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상호 미국변호사는 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GE Real Estate Korea의 General Counsel로서 REO, ABS, REITs, REF 등의 구조화된 부동산매매, 부동산담보대출, Sale & leaseback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수행하였고,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업 인허가 및 규제를 포함한 Government Relation, Corporate Governance, Compliance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부동산금융파트에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동호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동호 미국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8월 26일 유동호 미국변호사(캘리포니아)를 영입하였습니다.

유동호 미국변호사는 LG전자 해외법무팀에서 집단소송, ICC 중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미국 로펌 재직 시에는 연방 상표법 관련 업무를 담당, USPTO에 다수의 상표를 등록시켰으며, 각종 법인 설립, 부동산 및 비즈니스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미국 로스쿨 진학 전에는 한국일보사의 영어일간지 코리아타임스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노동부, 국회, 통일부 및 국방부에 출입했습니다.

유동호 미국변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에서 JD 과정을 마쳤으며, 재학 당시 세계적인 비교법학자인 Ugo Mattei 교수의 연구조교로 활동하며 판례집 *Schlesinger's Comparative Law*의 편집과 감수를 담당했습니다.

현재 M&A 및 일반 기업 업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으로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한 합작투자 업무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안나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안나 미국변호사)

지평지성은 2013년 5월 16일 박안나 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안나 미국변호사는 미국 Washington D.C.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미국 알라바마 주 법원 및 Paul Hastings LLP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지평지성 해상팀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대빈 공인회계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대빈 공인회계사)

지평지성은 2013년 9월 23일 김대빈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대빈 회계사는 KAIST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Audit 부서를 거쳐 현재 지평지성 부산 사무소에서 조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지성 소식 ■

## 강원일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원일 변호사](#))

지평지성 강원일 변호사가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Dickinson School of Law(Penn State Law)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송한사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송한사 변호사](#))

지평지성 송한사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최수진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수진 변호사](#))

지평지성 최수진 변호사가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이광선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광선 변호사)

지평지성 이광선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유정한 변호사, 유학 마치고 복귀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한 변호사)

지평지성 유정한 변호사가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 업무사례 ■

##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법률자문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인천공항컨소시엄이 미얀마 민간항공청이 발주한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한따와디 신공항사업'은 미얀마 교통부 산하 민간항공청(DCA, Department of Civil Aviation)이 발주한 총 사업비 11억불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의 법무법인은 물론 시공사·운영사·금융·회계법인 등이 종합 진출하여 우리 기업에 상당한 경험과 부가가치를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기사]

- 건설경제 - 미얀마 신공항사업, 금융·회계·법무법인 공동진출(2013. 8. 13.)
- 정책브리핑 - 인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13. 8. 11.)
- 연합뉴스 - 인천공항, 미얀마 한따와디 신공항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2013. 8. 11.)
- 국민일보 - 인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2013. 8. 11.)
- 파이낸셜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 미얀마 신공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13. 8. 11.)

### [담당 변호사]

#### 지평지성 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JIPYONG JISUNG MYANMAR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



유정훈 변호사 · 고세훈 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  
미얀마 현지법인장

■ 업무사례 ■

## 지평지성,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지평지성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사건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인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가진 장애의 경중이나 정도를 가리지 않고 단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 장애인신문 -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구제 청구 소송, 3년 만에 일부 승소(2013. 9. 6.)

###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 업무사례 ■

## 지평지성, (주)이글루시큐리티가 수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법률자문

지평지성이 (주)이글루시큐리티가 수주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에서 개인정보 분쟁 발생 시의 법률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주)이글루시큐리티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삼정 KPMG, 고려대학교가 체결한 4자간 MOU 이후의 첫 수주 사례로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의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를 실제 고객에게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이글루시큐리티, 우정사업정보센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수주(2013. 9. 12.)

###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 법률 논단 ■

## [금융\_해외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유의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상호 미국변호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러 산업을 망라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시장의 영역을 글로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시장의 협소함에 과도한 경쟁이 더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실물 투자의 경우, 국내에서 신용도 높은 임차인으로부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양질의 부동산 공급이 드문데다 투자자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양질의 투자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기관 투자자들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위축된 해외 자본과는 대조적으로 2009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운용 규모 1조원 안팎의 중소 연기금, 기관투자자들도 가세하여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해외 사모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2009년 말 약 1조 6천억 규모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4조 7천억에 이르러 3년 반 동안 약 3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 펀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한 금액을 합치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자본은 약 6조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매도인 주도 시장(seller's market), 해외 부동산 가격의 거품론,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과도한 리스크 노출, 투자 후 사후관리의 역량 부재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대두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채권수익률 하락 등으로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양질의 해외 수익형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편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 및 국내외 로펌 선정

시 유의할 점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도 높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리스크는 자산실사 단계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차인의 신용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회사의 보증 또는 default 시의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부보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펌의 조력과 현지 market practice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과세 또는 환급의 부인 등 세무 위험 또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슈입니다. 특히 절세를 위하여, 지분 양수도 방식을 택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indemnity를 요구하거나, 영속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indemnity insurance 등의 부보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국적의 합작 파트너들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 투자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세무 이슈도 더욱 복잡,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펀드의 설립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이슈에 전문 역량이 있어 명확하게 의견을 줄 수 있는 로펌의 선정이 중요하며, global presence를 가진 로펌이 유리합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법률 자문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법률 이슈가 아닌 commercial한 이슈에 있어서도 현지 로펌의 조언을 어느 정도 기대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꾸준한 해외 투자를 통해 일부 경험을 축적하였지만 아직도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단순한 법률 자문보다 거래와 관련한 여러 참여자(브로커, 매도인, 매도인 어드바이저, 대출기관 등) 및 현지 Market Practice(Commercial한 부분까지 포함)에 관한 조언이 더욱 유익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국내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appetite, 펀드 등 국내 법제에 대한 현지 로펌의 기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내 로펌을 통해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 있는 현지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현지 로펌이 거래를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현지 자산의 매입이나 지분의 매입, 투자구조, 공동투자협약, 세무 관련 이슈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종종 국내 법적 이슈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국내 펀드 설정 및 규제법 이슈나 내부 투자 승인 기준의 준수 및 기타 내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국내 로펌을 매개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내 로펌을 통해 해외 로펌을 핸들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신 법령 ■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내용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

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행규 변호사 | 채희석 변호사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마침내 2013년 8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 마련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자본시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거래소 허가제 시행,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 정비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M&A 시장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주목받고 있는 PEF와 관련해서도 PEF 전문 운용사 등록제의 시행, PEF의 주식 관련 사채 투자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가.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 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다.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 2.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가.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3.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가.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 4.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가.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 나.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 5. 불공정거래·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 가.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 나.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6.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

- 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 나.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라.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 7. 기타

-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

- 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

8.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 [금융관련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이승현 변호사 | 안상훈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 유도,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억제 등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2013년 8월 13일자로 공포되었으며,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고된 개정안(이하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내용

#### 1) 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건전성 제고(안 제13조 신설)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의 적정성 등을 감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②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당·부실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여 상호저축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4조,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 ① 예금 등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② 거래자에게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자의 투자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거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모집 제한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 도입(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 ①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 ②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모집 제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의 도입을 통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간의 동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2조의6 신설, 안 제38조의2)**

-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대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등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正道)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안 제24조의2)**

- 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경영지도 대상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최신 법령 ■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보험회사 등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2013년 7월 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7월 8일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규정')도 개정·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26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내용

#### 1)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을 위한 제도 개선(영 제57조 제2항 신설)

개정 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①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등(이하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영 제57조 제1항).

그런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익법인등')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가 3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 기회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2)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금지(영 제57조 제5항 제2호, 규정 제7-13조의2 신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①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함께 신설함으로써, 이번 개정 내용이 보험회사 대주주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영 제57조 제2호).

또한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공익법인등에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② 무상양도등 행위 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③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④ 관련 현황 및 적정성 점검·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 ⑤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에만 양도자산이 이용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⑥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없을 것, ⑦ 자산의 무상양도등 행위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등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 제7-13조의2 제1항, 제2항).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호 통과 및 관련 감독규정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최신 법령 ■

## [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분석 ②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의무이행소송 도입, 원고적격 확대, 가처분 제도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집행정지, 소변경·이송, 당사자소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1. 집행정지(안 제24조 이하)

개정안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부 집행정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정지원칙은 유지하되,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금전적 손해가 우려될 경우, 개정안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금전상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 가능한 손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금전적 손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1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존속보호를 지향하는 행정소송의 본질을 고려하여, 재산적 손해 이외의 법익 침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허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김중권, "권리구제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마련",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50쪽 이하).

### 2. 소변경·이송 허용범위 확대(안 제22조)

개정안은 취소소송을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나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당 청구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 행정에는 공법상 계약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정영역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가진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 행정권한을 위탁·위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잘못 제소할 경우 제소기간 도과, 소각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 변경·이송 허용범위 확대는 소송과정에서의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관할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제9조).

### 3. 당사자소송 활성화, 가집행금지조항 삭제, 처분변경 시 소변경

개정안은 당사자 소송을 “행정상 손실보상·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이나 그 밖의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48조 이하). 이로써 편의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던 행정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할 혼란 방지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안 부칙 제1조).

현행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3조). 이는 재산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소송당사자 일방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개정안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써, 제소기간과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안 제23조 제2항).

### 4. 다운로드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최신 법령 ■

## [자원·에너지·환경&인프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것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2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및 LED 기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내용

- 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해야 하는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조례 제8조 제5항 신설).
- 나.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와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청내용(이하 “협의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조례 제20조 제8항 신설).

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조건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조례 제22조 제6항 개정).

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공사중지 명령의 불이행(제20조 제6항, 제21조 제2항)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례 제34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자(제4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사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제20조 제5항), 협의절차를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자(제21조제1항),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례 제34조 제2항)

마.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조정을 조정하여,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삭제했습니다(조례 별표2 6호 라.~사. 삭제).

또한, 서울시는 2013년 7월 11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이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를 변경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3호, 2013년 9월 1일 시행).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 이상 대형신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물 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변경 전 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하고, 조명기기 전력 부하량의 50% 이상(변경 전 25% 이상)을 LED조명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2.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 최신 판례 ■

## [형사] 정보저장매체(USB) 원본과 출력물의 증거능력

장품 변호사

### 1. 사건 경위와 쟁점

이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이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건설하고 국내 정치동향과 군사 정보 등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된 상고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나 USB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2. 판시사항

(1) 우선 비공개증인신문절차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

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참조),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 동일성/무결성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압수한 컴퓨터용 디스크나 USB 등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① 피압수 · 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문서위조를 방지하는 전자지문의 일종)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②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③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3. 판결의 의미

최근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증거가 점차 증가하면서, 디지털 증거 출력물의 증거능력이 빈번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원본과 출력물이 동일한지, 그리고 압수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그 원본내용이 변동되지는 않았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원본의 사후 변경이 용이한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하여금 그 동일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되지만, 사후적으로도 수사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가 증언을 통해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원본자료와 출력문건의 대조를 통해서도 그러한 동일성이나 무결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MP3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압수·수색이 개시된 이후 MP3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접속한 흔적이 나타났고, 그 접속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증거능력은 일반 서증과 달리 그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까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최신 판례 ■

## [지적재산권]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사용료의 범위

최승수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1. 판결의 요지

이동통신사업자인 甲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甲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인 피고는 2002년 3월경부터 '컬러링'이라는 이름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피고는 2009년 1월부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8. 2.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는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의 전송사용료에 관하여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폰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X 9% X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징수규정 제23조 비고2)는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

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원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사건 매출액 정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월 900원을 내고,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음원을 구매할 때 1회 정보이용료로 700원 또는 1,4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 정보이용료 이외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3.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출액 정의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그 문언상의 의미대로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 수입'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 사건 매출액 정의상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전송사용료는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전송'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는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화연결음과 관련해서는, "먼저 음반제작사 등이 최초로 만든 마스터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CP가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와 형식의 음원으로 가공하고, 가공된 음원은 CP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 되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받고 판매되며, 판매된 음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저장된 음원이 음성통화 시 이용되는 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는 방법으로 전송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중 CP 등이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피고가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통화연결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원저장서버, 가입자정보 관리서버 및 통신망의 이용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2년경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였던 피고는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투자비, 간접경비,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상수입 등 근거 자료를 첨부·신청하여, 정보통신부로부터 통화연결음을 전달하여 주는 이 사건 서비스를 통신역

무로 보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인가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별도로 CP가 가공한 음원 등 콘텐츠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된 저작권 없는 음원이 통화연결음으로 발신자에게 전달되므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피고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 전 원고는 CP 등과 "CP 등이 원고의 관리저작물을 피고의 컬러링 서비스에 제공함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아닌 CP 등을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보아 왔고,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6. 7. 14. 개정된 것)상 '매출액 정의'가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 최신 판례 ■

## [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김성수 변호사 | 여연심 변호사

### 1. 판결의 요지

- 가.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단체교섭'이란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 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다.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가 사용자단체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위 각 교섭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 사실관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원고들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학교회계직원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단체교섭의 상대방은 각 공립학교의 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원고들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3. 판결의 의의

- (1)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섭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2)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인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섭요구사실 공고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일부여서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판결로 향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섭 절차를 주의해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 최신 판례 ■

## [행정]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 1. 판결의 취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사실관계

서울시는 2004년 6월경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05. 3. 18. 개정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관악구 A동 일대 약 12만㎡를 B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같은 날 관악구청장은 B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B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05년 12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구역을 포함한 A동 일대 약 53만㎡를 C뉴타운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10월 C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B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A동 일대 23만㎡를 C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 승인 시 685명에서 촉진구역 지정 시 1,411명으로, 구역면적은 약 12만㎡에서 약 23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C재정비촉진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B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실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악구청장에 '연번이 부여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관악구청장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3. 소송의 경과

원심 법원은 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과반수에 미달하는 수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승인처분 당시 법령에 의하면 동의서 형식이나 동의시기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승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실효 주장에 대하여, 사업구역면적 및 토지소유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전체 위치 등을 종합할 때 B정비예정구역과 C재정비촉진구역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B추진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관악구청장의 '연번 부여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추진위원회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실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② B정비예정구역과 C촉진구역 사이에 면적은 약 89%,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06%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B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

에 불과하므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하였습니다.

#### 4. 판결의 의의

2002년 시범뉴타운 지정 이후 뉴타운 지정이 활성화되면서, 대상 판결 사안과 같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는 형태로 다수의 뉴타운이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도시정비법에는 조합과 달리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추진위원회의 지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상 판결과 같이 뉴타운 지정으로 사업구역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경우, 기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새로 편입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존 추진위원회의 지위 인정 여부는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기존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설립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비교, 정비사업계획 변경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학상 행정처분의 실효는 목적물 소멸 등 행정처분 대상 소멸, 해제조건의 성취 및 종기의 도래, 목적의 달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목적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목적 달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일반론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대상 판결 사안에서는 사업구역면적 89%, 토지등소유자 수가 106% 증가하였음에도, 기존 추진위원회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대법원은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 효력 유지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 최신 판례 ■

## [조세]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임승혁 공인회계사 | 김혜영 변호사

### 1. 사실관계

甲회사는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가공매출액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2002사업연도 내지 2004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됨.

甲회사는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증액경정으로 인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

### 2. 쟁점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을 통한 법인세 과다신고를 하였다가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통해 법인세 과소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법인세 과다신고를 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

### 3. 판시사항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 4. 해설

본건에서는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분식결산을 통한 법인세 과다신고를 하였다가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분식결산을 통해 법인세 과소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법인세 과다신고를 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분식결산의 효과를 서로 상쇄시킬 필요성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 최신 판례 ■

## [헌법] “7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2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헌 결정”

정원 변호사 | 구나영 변호사

### 1. 사건의 개요

A병원은 2007년 8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병원경영과정 I”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년 1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훈련비용 약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병원경영과정 I”을 이수한 직원들 중 B직원은 실제로는 위 훈련과정을 대리 수강하였기 때문에, B직원은 훈련비용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병원은 B직원의 훈련비용 75,720원을 포함하여 훈련비용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A병원이 B직원의 훈련비용 75,720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21일 A병원에 대하여 ① 부정수령액 75,720원의 반환명령, ② 부정수령액 상당액의 추가징수 처분, ③ 부당하게 지원받은 날인 2008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2억 3,993만 6,93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병원장은 위와 같은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지급제한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i) 지원을 제한하거나 (ii)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iii)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 제1호 및 제25조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구 고용보험법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비 등을 지원받은 자에게 3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①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원 자체의 제한(지급제한조치)을,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반환명령)을 각각 명하는 한편, ③ 여기에 더하여 징벌적인 의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하고 있습니다(‘추가징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i) 지원의 제한’과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노동청장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받은 날인 2008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만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 제75조). 즉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i) 지원의 제한’과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사항 중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회수”를 의미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i)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한 것입니다.

### 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외에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현재 상당수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장래를 향하여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임에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지원금 지급제

한 의 기산일을 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은 날 또는 지급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과거로 소급하여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276, 2011구합14289, 2011구합33976, 2011구합15336, 2011구합20017, 2011구합14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72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4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63, 2011누454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누4428 판결 등).

이번 당해 사건에서도 A병원은 2011년 1월 21일 지급제한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일(2011년 1월 21일)이 아닌 부정수급일(2008년 1월 22일)로부터 1년 동안 소급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과거 1년 동안 정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 전부(2억 3,993만 6,930원)를 반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주의 부정수급액이 고작 7만원 정도였음에도 2억원이 넘는 지원비용을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가혹한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률이 예정한 제재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일정 기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을 것인데, 관할관청의 지원 결정을 신뢰하여 해당 훈련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실제로 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뒤늦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관련 사건들에서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므로 지급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5.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 최신 판례 ■

## [도산]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 1. 사실관계

甲회사는 2009년 6월 17일 乙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7월 23일 10시에 피고였던 乙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 甲회사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09년 9월 4일 회생법원에 위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구하는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함. 乙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를 했음.

채권조사기간의 말일은 2009년 10월 16일이었는데, 乙회사의 관리인이 2009년 8월 26일에 소송수계신청을 했을 뿐 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

### 2. 쟁점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에 해당하는지

### 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 확정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익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

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 4. 해설

본건에서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한 소송수계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甲회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乙회사의 관리인에 의한 채권조사기간 내의 적법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그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인 甲회사나 이의자인 乙회사의 관리인이 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乙회사의 관리인이 채권조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아직 회생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甲회사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하고, 수계신청 이후에 乙회사의 관리인이 甲회사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해 적법한 이의를 하여 이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계신청을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위 기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 최신 판례 ■

## [보험] 단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배성진 변호사

### 1. 사실관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작업장을 사용하는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乙 회사에 고용된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의뢰받고 A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그의 실제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를 甲 회사의 직원으로 보고 원고 회사<sup>1</sup>와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A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 A가 甲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됨.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원고 회사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 102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2. 쟁점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3. 판시사항

<sup>1</sup> 갑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의 관계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해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소속 피용자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체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를 보험모집인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험계약자 측에 적극적으로 고지·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과거에도 피고 보험회사가 유사한 방법으로 무효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정,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재직증명서조차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 최신 판례 ■

## [제약·바이오·의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관계 서류'의 범위

신민 변호사 | 서준희 변호사

### 1.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甲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하였으나, 甲 요양기관은 전산기록의 형태로 보관 중인 자료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출을 거부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甲 요양기관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데, 甲 요양기관은 법원에 요양기관업무정지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 2.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에 전자기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 3. 판시사항

(1)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



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3) 위와 같은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4)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위 조항의 관계 서류에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자료에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해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sup>2</sup>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호), 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같은 법 제95조).

<sup>2</sup> 참고로 일부 문구만 수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이자 범죄의 구성요건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 적용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에 전자기록도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회적 변화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내용,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근거하여 전자기록도 위 규정이 정하는 서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 단신 ■

## 김성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차 정보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7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차 정보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9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하는 일본 아시아의사법제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의 교류회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일본 아시아의사법제연구회는 이시가와 히로토시(石川寛俊) 변호사를 대표로 10명의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교류회의 행사에는 7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소송의 통계적 개관과 민사상 책임의 실체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황에 대하여 양국의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의 통상임금 관련 논문이 월간 노동법률 9월호(제268호)에 [특집3 통상임금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전문 보기\]](#)

김성수 변호사가 9월 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의 방송중계 해설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가 직접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계방송의 시작시간 10분(오후1시50분부터 2시) 및 말미 10분(3시50분부터 4시) 정도에 출연하여 통상임금의 의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성, 당사자간 주요 쟁점과 주장 요지, 법정 변론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일정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 KTV한국정책방송(2013. 9. 5.)

김성수 변호사가 9월 17일 삼성그룹 법무전문 연수에 참석하여 삼성그룹 내의 법무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관련 법적 쟁점-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근동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근동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 단신 ■

## 이행규 변호사, 통상산업포럼 분과 전체 워크숍에 법률분과 위원으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가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통상정책 추진과 관련 민관협력과 함께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발족한 통상산업포럼 분과 전체 워크숍에 법률분과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상해 사무소 최정식 변호사, 중국 차스닥 상장회사인 상해진리타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상해 사무소 최정식 변호사가 중국 차스닥 상장회사인 상해진리타이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단신 ■

**정철 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주관 '미얀마 투자진출 세미나'에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및 최근 적용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정철 변호사가 지난 9월 12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미얀마 투자진출 세미나'에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및 최근 적용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휴먼텍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휴먼텍코리아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회생계획 인가 전 파산선고에 따라 영업양도 등 M&A 방식의 파산절차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신 ■

## 김혜영 변호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창업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혜영 변호사)

김혜영 변호사가 지난 8월 28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창업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해원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률분석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해원 변호사)

이해원 변호사가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률분석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 단신 ■

**한승혁 호주변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 주최 '제1기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워크숍' 교육에서 '아세안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법률)'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지난 7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아세안 시장 진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제1기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워크숍' 교육에서 '아세안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법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상수 공인회계사, 논문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이 '조세와 법' 제6권 제1호에 게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상수 공인회계사**)

2013년 6월 구상수 공인회계사의 논문 「해외투자 관련 조세제도 및 실무적 쟁점」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조세와 법' 제6권 제1호에 게재되었습니다.